

September 22,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53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9. 14. ~ 9. 18.) -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금감원]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 9. 15.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여 9월 중 국회에 제출 예정임. 주요 내용으로 ①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②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하고, 이관 대상에 휴면성 투자자예탁금을 추가, ③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지원’ 등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금지 등이 있음

[참고자료]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기부1] 중소기업 비대면·온라인 수출지원 성과 및 세부 지원 과제 발표

2020. 9. 14. 중소기업벤처부는 ‘비대면·온라인 수출 지원 4대 과제’를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비대면 방식 고도화) 오프라인 현장지원 연계 등 화상상담회 고도화, ② (비대면 거래 확대) 해외온라인물 판매지원 및 K-세일 방식 글로벌 진출, ③ (비대면 新동력 발굴·육성) 온라인·비대면 관련 유망스타트업 진출지원, ④ (기반 확충) 지원시스템 체계화·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확충 등이 있음

[참고자료] 비대면 수출지원 성과 및 세부 지원과제 발표



[중기부2] 기술창업 활성화 위한 20개 규제 혁신 추진

2020. 9. 17. 중기부는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0대 산업 규제혁신 방안(Ⅱ)을 수립·발표함. 또한, 기술창업분야에서 창업진입장벽 제거, 성장 촉진, 국가연구개발(R&D) 효율화 등을 위한 총 20개 과제 발굴·개선 추진하기로 함

[참고자료]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비경회의 안건



[산자부] 산업단지의 친환경 첨단 산업기지화를 위한 지능형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2020.9.17.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현장인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산업) 산단을 디지털화하여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 ② (공간) 친환경화와 디지털의 융합을 통해 저탄소·친환경 공간으로 전환, ③ (사람) 청년 희망 키움공간으로 탈바꿈, ④ 이미 추진중인 7개 지능형산단을 디지털·그린 뉴딜이 융합한 지능형 친환경 산단으로 전환, ⑤

'25년까지 15개 지능형 친환경 산단을 지정하고 전국으로 성과 확산 등이 있음

[참고자료]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 발표



[참고자료]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



<분야별 개선 과제>

분 야	개선 과제
창업진입장벽 제거(6개)	창업범위 개편, 지식 서비스업 부담금 경감, 대학창업활성화추진, 플랫폼 등 신사업 활성화 (육아도우미 매칭플랫폼, 플랫폼 기반 중개 서비스, 스터디 카페)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촉진(3개)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확대,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 검토, 창투사 외부지정감사 제외
중소·벤처 연구개발 (R&D) 효율화(6개)	(표준화) 기술 도입비 산정, 과제 중복성 검토, 인건비 증빙서류 (부담완화) 연구노트 작성의무, 현금부담비율, 참여부채비율 규정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법령정비(5개)	창업기업 공장설립 의제사항 추가, 부담금 면제절차 간소화, 법령정비(공장 착공일 및 사업 계획 승인취소 기준일 명확화, 공장설립 업무처리 기한 준수 강화)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포 법안

[국토부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9. 8.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되어 공포함. 주요 내용으로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2018년부터 재시행되었고,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19.12.27.)으로 시장의 합법성 논란이 해소되어 재건축부담금 부과 · 징수가 금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국가귀속분(50%)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거복지기반시설 설치수준 등 5개 평가항목을 4개 평가항목으로 조정하고, 각 지표별 가중치를 상호 조정하여 주거복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을 더 많이 지원하는 개정임

[국토부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9. 8.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되어 공포함. 주요 내용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38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원 사항을 지역개발사업의 규모 ·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자문의 제공 및 지역개발사업 시행 비용과 보조 · 융자 등 재정적 지원 수단 간의 연계 등으로 정하고,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축 ·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국토연구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임

> 입법예고 법안

[국토위]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20. 9. 16.부터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 ①국가는 수소도시건설 기본 방향과 목표, 투자계획,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연구개발 등 종합계획수립을 수립하고 수소도시를 건설하려는 지자체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소도시 조성 방향을 도시·군계획에 의무적으로 사전 반영, ② 사업계획 수립 및 준공검사, 사업시행시 인허가 등의 의제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수소관련 입지규제 개선요구를 반영한 특례 부여 등이 있음

> 법률 발의안

[보건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권장하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등 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 등도 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신설)

[국토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현행법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포함되어 있던 튜닝작업을 분리하고 자동차의 튜닝과 관련한 정의 규정과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 법률안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검사 중 튜닝검사를 폐지하고, 제정 법률에서 자동차의 튜닝을 할 때에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안전기준과 자동차부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그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등 제재를 하는 형태로 자동차의 튜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2조의 2제3항 및 제35조 등)

[산자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등 17인)」

코로나19로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몇몇 온라인 플랫폼 운영회사들은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 수수료, 광고료를 과대하게 요구하는 한편, 차별적 오픈리스트 정책 등 편법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호, 제10조제4호, 제21조제1항제23호 신설)

[산자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의원등10인)」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게 재정 지원 및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지원대상을 입주기업으로 확대하고, 신규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5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을 신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5년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정무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납부 받을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어 소비자의 지불결제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5조의2 신설)

[정무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행 시행령에서는 2001년부터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예금자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법사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① 차등의결권주식, 거부권부종류주식, 임원선·해임권부종류주식을 새롭게 도입, ②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신주인수선택권을 신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을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③ 신주인수선택권은 행사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행사가액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행사하고, 신주인수선택권자는 그 행사가액을 납입하는 때 신주의 주주가 되도록 함

[과방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3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표시·광고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제3항 신설)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Chong-Ah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